

대한민국정부



제19640호 2019. 12. 3.(화)

【법 률】

○법률제16661호(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)	7
○법률제16662호(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)	11
○법률제16663호(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)	13
○법률제16664호(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)	13
○법률제16665호(지방자치단체 준자·준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)	16
○법률제16666호(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)	21
○법률제16667호(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)	29
○법률제16668호(경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)	31
○법률제16669호(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)	32
○법률제16670호(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)	33
○법률제16671호(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)	34
○법률제16672호(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)	42
○법률제16673호(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)	43
○법률제16674호(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)	44
○법률제16675호(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)	45
○법률제16676호(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)	45
○법률제16677호(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)	46
○법률제16678호(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)	47
○법률제16679호(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)	64
○법률제16680호(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)	65
○법률제16681호(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)	65
○법률제16682호(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)	66
○법률제16683호(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)	67
○법률제16684호(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)	68
○법률제16685호(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)	71

(이면 계속)

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☎(044)205-1492, 205-1493
(30116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

○법률제16723호(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)	159
○법률제16724호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)	159
○법률제16725호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)	161
○법률제16726호(질해예방법 일부개정법률)	165
○법률제16727호(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)	167
○법률제16728호(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)	167
○법률제16729호(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)	170
○법률제16730호(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)	171
○법률제16731호(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)	172
○법률제16732호(원격관리법 일부개정법률)	172
○법률제16733호(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)	174
○법률제16734호(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)	178
○법률제16735호(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)	178
○법률제16736호(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)	179
○법률제16737호(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)	180
○법률제16738호(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)	182
○법률제16739호(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)	182
○법률제16740호(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)	184

【대 통 령 령】

○대통령령제30221호(피한청후전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	185
○대통령령제30222호(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)	187
○대통령령제30223호(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)	188
○대통령령제30224호(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	189
○대통령령제30225호(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	189
○대통령령제30226호(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	191
○대통령령제30227호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)	191
○대통령령제30228호(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)	195
○대통령령제30229호(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)	196
○대통령령제30230호(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	197
○대통령령제30231호(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	201
○대통령령제30232호(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	202
○대통령령제30233호(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)	202
○대통령령제30234호(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	203

【총 리 령】

○총리령제1573호(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	204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제19640호

관 보

2019. 12. 3.(화요일)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19년 12월 3일

국무총리 이낙연

국무위원
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

●대통령령 제30232호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실태조사의 실시, 교통체계 개선권고와 그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, 이행계획서의 접수와 그 이행의 확인·점검 및 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
별표 9 제2호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의2.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제1항 제4호	50만원	100만원	150만원
---	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	-----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인 특별실태조사의 실시, 개선권고와 그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, 이행계획서의 접수와 그 이행의 확인·점검 등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,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, 2차 위반 시 100만원,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.

<별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19년 12월 3일

국무총리 이낙연

국무위원
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

●대통령령 제30233호

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